

# 교원의 외부겸직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5.11.10

개정 2026. 3. 1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4조에 의거,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외부겸직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학 전임교원에게 적용하고, 비전임교원에게는 이를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겸직”이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이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직을 위촉받거나 출강하는 등 대학에서의 업무 외의 지속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창업겸직”이란 대학 ‘창업규정’에 따라, 교원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이 설립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사외이사겸직”이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영리업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의 지급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 2 장 겸 직

제4조(겸직) ① 교원은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개정: 2026.3.1.)

② 창업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직을 겸직하고자 할 경우 소속학과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승인으로 겸직할 수 있다. 단, 제9조에 따른 참여율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등 교무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3.1.)

1. 정부의 각종 위원회 또는 정부가 설립한 공익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비상근 위원
2. 학술활동을 위한 학술단체 또는 학술협회 등의 무급, 비상근 임원 및 위원
3. 대학 기술지주 주식회사 당연직이사
- ④ 대학에 교원으로 임용되기 전부터 겸직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겸직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활동에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제9호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4조제1항의 지능정보기업
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전략 산업등 관련 기업
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7.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8. 다른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9.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교원이 겸직할 수 있는 경우
10.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겸직기간) 겸직 기간은 임명·위촉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업겸직은 '창업규정'의 기준을 따른다.

제7조(겸직의 허가) ① 총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겸직의 필요성, 기간의 적절성, 대상기관의 적합성 등
2. 제2항 각 호에 해당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겸직을 허가하지 않는다.
  1.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본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대학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겸직기관에서의 직무가 본교의 이익에 상반되거나 본교의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허가의 취소) 총장은 다음의 경우 겸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근무형태, 직책, 겸직기간, 보수의 지급여부 등을 허위로

-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지 않은 활동을 하였을 경우
2. 교원이 겸직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겸직기간 중 제7조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 3 장 처우 및 의무 등

제9조(겸직 시 보수 지급기준) ① 외부 겸직활동에 참여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겸직 참여율이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 학과장의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근무비율에 따라 보수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겸직 참여율은 교원이 외부 겸직에 참여하는 모든 업무의 합산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주 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겸직 참여율을 10분의1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3.1.)

② 다만 연구비 및 기금 등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비전임교원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의무) ① 위촉기관의 폐업, 위촉 취소, 또는 위촉의 조기 종료 등으로 기 승인받은 겸직사유가 조기소멸된 경우, 교원은 소속학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3.1.)

② 기 허가받은 겸직의 근무비율, 근무형태, 겸직기간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교원은 교무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필요시 교원에게 다시 겸직허가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외이사겸직) 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겸직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외이사겸직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업체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받은 보수 일체를 다음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보수 일체의 월별 지급 내역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제12조(세부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